

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

하나자산운용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 99 조제 2 항제 5 호자목 및 『금융투자업규정』 제 4-75 조의 2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.

- 아 래 -

1. 의결권 행사의 원칙 및 세부사항

(1) 의결권 행사의 원칙

- 당사는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다음의 각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일임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,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위임 행사합니다.

1. 주주의 권익 보호
2.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
3.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
4.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

(2) 의결권 행사의 세부기준

- 당사는 「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」을 제정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,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「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2.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

-의결권의 행사여부,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애널리스트 및 포트폴리오매니저 (이하 PM 이라 함) 의견을 기초로 동 기준 및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식운용본부장이 결정합니다.

-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적인 제 3 자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제 3 자 전문기관을 활용하더라도,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은 자산운용자인 회사에 있습니다

3. 이해상충 방지정책

-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이해상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용본부와는 독립적인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상시적으로 이해상충 문제를 점검하고 있으며, 다음의 방안 및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.

- 겸직의 금지
- 준법감시인과의 사전 협의
-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해상충 방지 교육
- 전문기관 활용

4. 투자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 등

- 당사는 「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가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투자자에 대한 통지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하여 그에 따릅니다.

- 투자자에 대한 통지 외에도 1년간의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한국 거래소의 기업공시 채널에 공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도 주요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연 1회 공시합니다

별첨 : 하나자산운용 「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」, 「의결권 행사 가이드 라인」

하나자산운용 「이해상충방지방안」